

지방세(취득)신고없이 Smart하게 과세하고, 군민에게 가산세 부담 덜어주Go!

민원인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·납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제로화로 경제적 부담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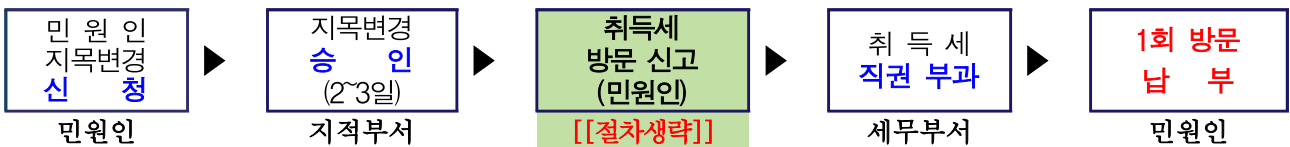
□ 추진배경

- 민원인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·납부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산세 부과 및 납세자 불만에 따른 체납률 증가
-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는 등 불편함 해소를 위한 업무개선 필요

□ 주요내용

- [제도시행] '20.1.2.~ / '20년 접수된 민원 건부터 시행
- [지원대상] 지목변경 민원인 전체 (*고흥군 기준 연평균 약700여명)
- [지원방법] 행정절차를 개선한 직권과세로 가산세 부담 제로화
 - 1단계. 민원인의 신고절차 생략을 위한 부서간의 협업 추진
 - 지목 변경 승인과 지가 산정 자료를 해당부서로부터 미리 받아 납세자의 **신고 없이도** 취득세를 산정
 - 2단계. 취득세 안내 및 고지서 동시에 발송 하는 시스템 구축
 - 산정된 취득세를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고안

[[과세 절차 개선 흐름도]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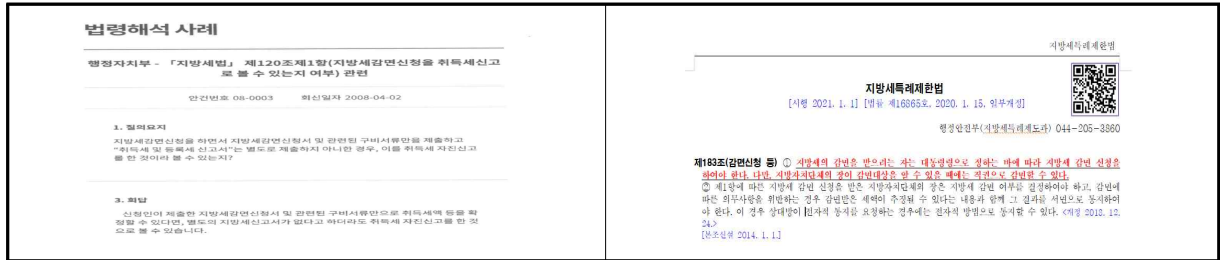
<p>관련부서 등 민·관 실무 협의</p>	<p>부서간 실무자 간담회</p>	<p>보도자료</p>

□ 추진상 문제점 및 극복사례

○ [법 해석] 신고서 작성 없이도, 납부 같음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

- 『지방세법』에서 “납세자는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”는 조항에 따라 **민원인이 방문 신고를 해야 과세를 부과하는 조항이 원칙** (지방세법 제20조, 시행령 제33조)

⇒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중, 유사 건에서 기관이 구비서류로 취득세액을 확정 시킬 수 있을 경우에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에 근거



○ [홍보 상] 현실적 홍보의 어려움

- 건축설계사무소 등에서 대행 시, 신고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다수

⇒ 관내 대행업체 (건축사무소) 등에 협조 공문 발송, 홍보 지속

○ [업무 상] 부서 간 협업의 어려움

- 부서간 협업이 중요한 업무로 담당자 변경시, 업무진행 차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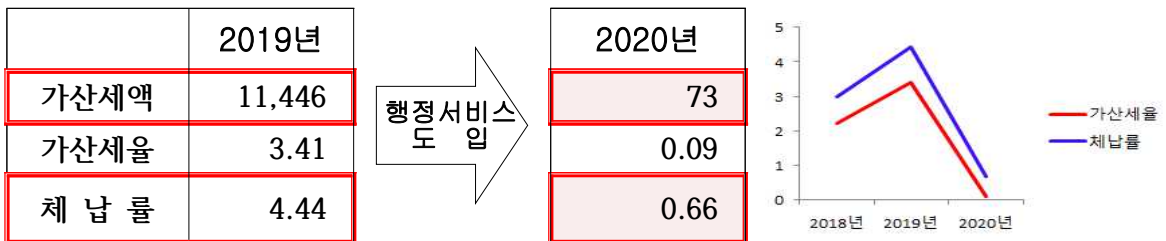
⇒ (부서간 협업 적용) 「지방세 기본법」 규정에 의거 정기 간담회 등 협업 도모

□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

○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한 [납세자의 가산세 및 체납률 제로화 도전]

- 직권과세를 통해 납부자의 신고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제로화 및 재정 부담 감소
- 민원인의 과세 불만 및 체납률 감소, 민원 만족도 향상

(단위: 천원, %)



○ 민원인의 기관 방문횟수 축소로 One-Stop 방문으로도 처리 가능

- 신고를 위한 민원인의 **재방문 없이도** 취득세 납부 가능토록 함
- 안내문과 취득세 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하여 납부 시 신고절차 같음

○ 현 과세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타분야 확대 적용

- 건축물 신·증축에 따른 취득세 분야도 적용 여부 적극 검토 중